#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60

발의연월일: 2020. 12. 23.

발 의 자: 박주민·강민정·김병욱

김승원 • 류호정 • 소병철

이소영 • 이수진(॥) • 이워택

이재정 • 주철현 • 최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에 대응하기에는 처벌이 약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 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 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 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 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 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
- 바.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안 제7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5조).

-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16조).
- 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거인·친족·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리 절차

- 제3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제5조제3항의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 4.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긴급잠정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잠정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잠정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잠 정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잠정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의 의하여 결정된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7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 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잠정조치 후 잠정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5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잠정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제8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판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잠 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 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 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후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0조(항고) ① 제7조의 잠정조치에 있어서 그 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수 있다.
- ②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12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15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

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

- 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3장 벌칙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 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람
-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